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333
----------	------

제출일자 : 2023. 6. 3.

제출자 : 달성군



1. 제안이유

5급 이상 공무원은 소관부서의 다양한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어 사실상 체납징수 업무의 실무를 하지 않으므로, 징수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을 4급 이상 공무원에서 관리자인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2조제5항 “4급”을 “5급”으로 개정하고,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는 단서 신설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 (1)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2) 입법예고(2023. 5. 10. ~ 5. 30.) 결과 : 의견 없음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5)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6) 부서합의 : 해당사항 없음
- (7) 비용추계서 : 생략(「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제1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항 중 “4급”을 “5급”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지급대상) ① ~ ④ (생략)</p> <p>⑤ 제1항 및 제4항에 불구하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4급 이상 공무원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단서 신설></p>	<p>제2조(지급대상)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 5급 ----- ----- -----. <u>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u></p>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稅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부과·징수에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① 법 제146조 제1항 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란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단순히 독촉장, 납부최고서, 체납액 고지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2. 과세물건에 대한 압류만으로 해당 과세물건에 대한 체납액이 징수된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